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없이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 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면서**,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재직기간 합산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용 전 과정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임용시험 점검 절차 마련(안 제20조의2 신설)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 전 임용의 전 과정이 적절하였는지를 자체 점검하도록 함

나. **재난안전관리 경력 가산점 부여 의무화(안 제32조제2항)**

재난안전분야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함

다.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정방법 개선(안 제33조제13항 및 제14항 신설)

1) 퇴직한 국가공무원이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모두 합산하도록 함.

2)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강임되었던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강임 전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을 재직연수에 합산하도록 함.

라. 교육부·행정안전부장관 협의없이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기한 단축 가능(안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재난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교육부·행정안전부장관 협의없이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일의 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제32조제2항 중 “직위 또는”을 “직위,”로, “특정한 업무”를 “특정한 업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33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해당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한다.

⑭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1항

에 따라 강임되었던 국가공무원이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을 해당 승진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한다.

제62조제2항 본문 중 “시험 실시일”을 “원서접수마감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일”을 각각 “공고일”로 한다.

제6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험기일 전에 응시의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금액을 제62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62조제2항·제3항 및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임용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3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임용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원 계급보다 상위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 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자격증이 있거나 도서·벽 지 등 특수한 지역,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 또는 규칙으로 정 하는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 력이 있거나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가 산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 다. <단서 신설>	제20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 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 종합격자 발표 전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 야 한다.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직위,</u> ----- ----- <u>특정한 업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u>----- ----- ----- -----. <u>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 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가 산점을 부여하여야 한다.</u>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로서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4조(응시수수료)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 -----

공고일-----

-----.

③ -----

-----.

----- 공고일

-----.

제64조(응시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시험기일 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
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금액을 제62조에 따라 해
당 시험을 공고할 때 함께 공
고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44